

## 교원학술연구위원회 규정

<제정 1996.02.28.>, <13차 개정 2021.10.21.>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, 교육, 봉사 및 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명대학교 교원학술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04.08.>

**제 2 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.04.08.>

1. 교원의 학술연구, 교육, 봉사 등의 업적평가 심사
2. 교원의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
3. 도서 출판 신청 심사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 3 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, 교무처장, 산학연구처장, 기획조정처장 및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캠퍼스별로 1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0.06.04, 2012.10.19, 2016.04.08, 2017.04.26, 2018.03.01, 2019.08.29., 2021.10.21>

②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4.08.>

**제 4 조 (위원장 및 직무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04.08, 2017.04.26, 2018.03.01, 2019.08.29., 2021.10.21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 5 조 (회의)**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6.04.08.>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04.08.>

**제 6 조 (시행)**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. <개정 2016.04.08.>

**제 7 조 (간사)**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16.04.08.>

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 8 조 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 <개정 2016.04.08.>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학술연구평가위원회 규정과 출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  
[본부칙신설 2010.06.04.]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12.10.19.]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16.04.08.]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17.04.26.]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18.03.01.]

**부 칙**

이 내용을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21.10.21]